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양승현 연구위원

- 지난 2018년 11월 말 경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금융회사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에 투자·인수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의 자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 다른 금융회사의 경우 유권해석으로도 다양한 핀테크 기업으로 범위 확대가 가능하나 보험회사의 경우는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며, 2019년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 이와 달리, 은행법은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산법은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보다 폭넓게 해석·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제를 가진 일본의 경우, 자회사 업무범위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고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업무’도 영위할 수 있게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으며, 미 뉴욕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자회사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핀테크 기업을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은 보험소비자 편익 제고 및 보험산업의 미래 수익원 창출 관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임
 - 단순히 핀테크 기업을 업무범위에 추가로 열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핀테크 기업 외에도 널리 수요를 조사하여 개정 범위를 검토하고, 은행법이나 일본 보험업법과 유사하게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아울러,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내지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 검토 배경



-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핀테크 등 기존 프레임을 벗어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개발·제공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규제로 금융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규제는 금융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가 각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함¹⁾
 - 어느 금융권역의 업무영역 규제가 엄격하게 제한될 경우 그만큼 수익활동 범위가 축소되고, 반면 넓게 설정되는 경우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 금융회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임
 -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규제 방식에는, 본연의 금융업 외에 타 업무 겸영을 제한하는 직접적 규제²⁾ 외에도 자회사³⁾ 소유 내지 자회사 대상 회사의 업종을 제한하는 간접적 규제⁴⁾가 있음
 - 자회사 소유 제한 규제는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기업의 범위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음
 -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투자·인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함
-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27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발표함
 - 동 방안은 (i) 금융회사가 출자가 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ii) 투자가 가능 여부 확인, 승인심사 등에 신속절차(Fast-Track) 마련 및 (iii) 관련 법령상 '핀테크 기업' 개념 정의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타 금융회사들의 경우에는 유권해석으로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가 가능하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현행 보험업법령의 해석상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 금융위는 2019년 중 보험업법령상 자회사 범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본고에서는 이에 국내 금융회사 및 해외 주요국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범위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 법령 개정 방향에 관해 시사점을 얻어 보고자 함

1) 이성남(2008),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p. 7 참조

2) 보험업법 제10조 및 제11조 등 참조

3) 자회사(Subsidiary Company)란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에 의해 지배·종속되는 기업을 말함

4) 예컨대, 은행 및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출자지분 포함)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법령에 열거된 업종에 한해 금융위원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음(은행법 제37조 제1항, 보험업법 제115조 제1항 참조)

2. 국내외 입법례



가. 국내 금융회사 자회사 소유 규제

■ 보험업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은 다음과 같이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소유를 제한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종을 규제하고 있음⁵⁾

〈표 1〉 금융회사 자회사 소유 규제 현황

구분	보험업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산법
적용대상	보험회사	은행	금융지주회사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모든 금융회사
소유(출자)제한 비율	15%	15%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5%(+사실상지배), 20%, 25%, 35% ⁶⁾
자회사 업무범위 (제한비율 이상 출자가능회사)	(법 제115조 제1항) ① 금산법상 금융기관 ② 신용정보업 ③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 또는 부활 등 관리업 ④ 기타 영으로 정하는 업무 - 보험업 관련 전산 시스템·소프트웨어 등 대여·판매 및 컨설팅 - 보험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 - 기타 제한적 열거	(법 제37조 제2항) ①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 -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 금융업 - 은행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 전산업 - 열거된 업무 외 그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②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조 제2항, 영 제2조 제1항, 제2항) ① 금융 및 보험업 ②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 금융기관 전산·정보처리 등 - 금융업 조사연구 - 금융기관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은행법·보험업법상 자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그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법 제24조 제6항) ① 금융 및 보험업 ② 민간투자대상사업 ③ 신용정보업 등 금융기관 업무와 직접 관련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자회사 소유절차	①, ②, ③ 사전승인 ④ 사전신고	① 사후보고 ② 사전승인	① 편입승인 ② 편입신고	사전승인(설립근거법상 인가승인 시 면제)

5) 한편, 금융투자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자는 각 개별 법령상 자회사 소유 규제가 없어, 기업집단 소속인 경우 금산법상 자회사 규제만 적용 받음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회사 소유 규제를 받는 국내 금융회사들은 비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업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법령에 열거된 회사만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음

- 자회사 업무범위에 대한 열거 규정 중 은행법은 ‘은행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전산업’, ‘그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산법은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다양한 핀테크 기업을 포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반면, 보험업법은 그러한 규정 없이 법령에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범위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을 뿐이어서 법령 개정 없이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것이 불가능함

나. 해외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규제

■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미국 뉴욕주의 경우는 1998년 법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범위 규제가 철폐되었음⁸⁾

- 보험회사는 직·간접적으로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⁹⁾가 제정한 보험지주회사규제 관련 모델법은 보험회사의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영역의 범위를 제한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NAIC 440-1 §2A)¹⁰⁾
 - 그러나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영역은 주로 보험 관련 또는 금융관련 업무일 것을 일반적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비금융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산업자본을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직접 지배하는 것을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님¹¹⁾

6)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거나, 사실상 지배 여부와 무관하게 20% 이상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후 지분율이 각 25%,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차 승인이 필요함

7) 1. 보험회사 사옥관리업무, 2. 보험수리업무, 3. 손해사정업무, 4. 보험대리업무, 5.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6. 보험에 관한 교육·연수·도서출판·금융리서치·경영컨설팅 업무, 7.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업무, 8. 보험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 9. 보험에 관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 10. 자동차와 관련된 긴급출동·차량관리·운행정보 등 부가서비스 업무, 11.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12. 건강·장묘·장기간병·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 1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 14. 외국에서 하는 보험업,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보험대리업무, 보험에 관한 금융리서치 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또는 부동산업, 15.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 16. 자산유동화업무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1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자조합이 하는 업무, 18. 투자회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하는 업무, 19. 부동산투자회사가 하는 업무, 20. 선박투자회사가 하는 업무, 21.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하는 업무, 2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하는 업무(보험업법 시행령 제 59조 제1항)

8) 성대규·안종민(2015), 『한국보험업법』, pp. 498~499; 정재웅(2017), 『보험업법 해설』, pp. 660~661 참조

9)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NAIC)

10) 이성남 저, 앞의 논문, p. 148~149 참조

11) 미국의 보험법은 연방 은행법과는 달리, 보험회사와 산업자본 간의 결합을 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전히 금산분리 원칙은 보험회사에도 작용되며 사전적 규제가 아닌 사후적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은행 규제와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 함(이성남, 앞의 논문, p. 149 참조)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보험업법상 자회사 대상회사를 열거해놓고 그 이외의 회사는 자회사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일본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 소유가 허용된 자회사로 보험업법은 생명·손해보험회사, 소액단기보험회사, 은행, 보험업·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에 종속업무자회사, 금융관련업무 자회사, 신규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회사로서 내각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회사 등을 열거하고 있음
 - “종속업무”는 주로 보험회사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업무로 다른 사업자의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사무, 물품 구입·관리, 직업소개사업, 컴퓨터에 관한 사무업 등 총 24개호로 열거되어 있으며, ‘그에 준하는 업무로 금융청 장관이 정하는 업무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도 영위 가능함¹²⁾
 - “금융관련업무”는 보험모집, 보험사고조사, 금융기관의 데이터 처리,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운동시설 등 운영, 건강, 복지 또는 의료에 관한 조언업무 등 총 45개호로 열거되어 있으며, 종속업무와 같이 ‘그에 준하는 업무 내지 부대업무’에 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음¹³⁾
 - 나아가 일본은 보험회사에 관한 종합적 감독지침에서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음
 - 예컨대, 건강 관련 업무는 “옥내 운동 설비 등의 시설 또는 콜센터 등의 기능을 갖추어 전문 지도원, 의료 전문인 등을 배치해, 회원이나 상담자에 대해 건강의 유지·향상에 기여하는 업무”로, 복지 관련 업무로 “건강·의료·간호 등 복지에 관한 컨설팅, 고령자 등의 방문간호” 등을 열거하는 식임
 - 일본에서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 보험 서비스에 부수하여, 혹은 일체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 내용도 변화하고 있어 구체적 수요가 있고 사회적 의의가 있는 경우 자회사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¹⁴⁾

3. 제언



- 보험업법상 자회사 소유 규제의 목적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 보험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보험회사가 다른 업종을 겸업할 경우 자회사의 경영 실패로 인하여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재무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음
 - 주식회사와 같이 주주 책임이 제한되는 형태라면 일반적 지분투자와 다를 바 없어 규제 실익이 적다

12) 일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26호 참조

13)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7호 참조

14) 上原 純, 平成26年保険業法等改正における規制緩和, pp. 61~62 참조

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가 자회사 도산으로 인한 피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이 존재함

- 또한 보험회사가 본업인 보험업과 무관한 일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전문화 및 금융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음
- 그러나 변화하기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보험업의 효율적 수행이나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폭넓게 자회사로 투자·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규제 목적에 오히려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산업은 현재 성장의 한계 국면에 처해있어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슈어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로 미래 수익원을 창출하여야 함
- 사회 변화에 따라 핀테크, 건강관리서비스, 노인이나 어린이 관련 서비스 등 기존에 보험업과 관련하여 생각되지 않았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보험과 함께 제공되어 이용자 편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면 보험업의 발전과 전문성 제고로 이어질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보험업법령상 자회사 업무범위는 상대적으로 허용 범위가 좁고, 적용상의 유연성이 떨어짐

- 보험업법은 시행령에서 해석의 여지없이 허용 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은행법이 구체적 허용 업무를 금융위에 위임하고, 은행업감독규정에서도 열거한 사항 외에 ‘그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도 허용할 수 있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업법은 지나치게 경직된 규정 체계라 할 수 있음
- 해외에서는 자회사 규제가 없거나 허용범위가 넓은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열거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 보험업법 역시 보다 광범위하게 자회사 업무범위를 허용하고 있음
 - 우리 보험업법은 보험업 관련 업무로 시행령에서 22개의 업무만을 열거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종속업무 24개, 금융관련업무 45개 및 ‘그에 준하는 업무로 내각부령이 정하는 업무 및 부대하는 업무’라는 규정까지 두어 해석의 길을 열어놓고 있음

- 금융위에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화하고, 보험업법령을 개정하여 보험회사가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투자·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점은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일임

- 그러나 단순히 핀테크 기업을 보험업법 시행령에 추가적으로 열거하는 데 그친다면 향후 또 다른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법령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상존할 것임
 - 핀테크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수요를 조사하여 개정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예기치 못한 새로운 서비스 등장으로 자회사 업무범위를 재차 확대할 필요가 있을 때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이나 일본 보험업법령과 유사하게 ‘그에 준하는 업무로

금융위가 정하는 업무' 등의 형태로 위임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핀테크와 함께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내지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업무로 “건강·장묘·장기간병·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를 열거¹⁵⁾하고 있을 뿐임
 - “사회복지사업”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부 등 조항의 해석상 현재 보험회사 및 헬스케어업체들이 개발·제공하고자 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이 조항에 포함되는지 불확실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kiri**

15) 동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 참조